

제2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4. 2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4월 20일
전문위원 최 광 호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23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1년 4월 6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4월 6일

2. 개정이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1) 정원의 총수: 1,675명 → 1,716명 (+41명)
 - 2) 집행기관의 정원: 1,644명 → 1,685명 (+41명)
 -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 31명 (변동 없음)
- 나. 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3조 관련 별표 3)
 - 1) 정원 총계: 1,675명 → 1,716명 (+41명)
 - 2) 일반직 계: 1,670명 → 1,711명 (+41명)
 - 5급: 72명 → 73명 (+1명)
 - 6급 이하: 1,588명 → 1,628명 (+40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협의: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1.3.3.~2021.3.23.) 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감염병 대응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의 충수를 증원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정원의 충수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충수를 기존 1,675명에서 1,716명으로 41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을 1,644명에서 1,685명으로 41명 증원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변동 없음)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3조 관련 별표3)

- 정원 총계를 1,675명에서 1,716명으로 41명 증원
- 일반직 계를 1,670명에서 1,711명으로 41명 증원
 - 5급 72명을 73명으로 1명 증원
 - 6급 이하 1,588명을 1,628명으로 40명 증원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확보를 위해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16명으로 함.

- 집행기관의 정원이 1,685명으로, 현행 정원(1,644명)보다 41명 증가한 것임

☞ 증기인원 행정직 14명 사회복지 18명 보건 3명 세무 2명 방송통신 2명 간호 1명 토목 1명

▷ 분야별 정원조정 세부내역(붙임 1 참조)을 살펴보면,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¹⁾, 감염병 대응, 위기청소년 지원 등 국가정책 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증원이 3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지자체 인력 확보 2명
-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19.1)」 발표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 4명
- 스마트서울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 1명
- 그 밖에 아동청소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등임

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관점에서 읍면동의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주민 관점에서 제공하기 위해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 주민자치 제도적 기반마련, 읍면동 행정혁신 등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기반 마련

- 안 제3조는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으로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조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 5급 72명을 73명으로 1명, 6급 이하 1,588명을 1,628명으로 40명 증원함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규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번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안정적인 조직을 구축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인력증원에 따라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어야 할 것임.

붙임1

정원 조정 세부 내역

□ 구 총 정원 조정(안 제2조) : 1,675명 → 1,716명

구분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현행	1,675	1,644	31
변경	1,716	1,685	31
증감	+41	+41	

※ 분야별 정원 조정 세부내역

연번	세부내역	정원(명)	비고
	(합계)	+41	
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자치)	10	행정 +10 (찾·동사업)
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복지)	15	사회복지 +15 (돌봄SOS사업 12, 찾·동사업 3)
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간호)	1	간호 +1 (찾·동사업)
4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2	사회복지 +2
5	위기청소년 지원	1	사회복지 +1
6	감염병 대응 인력	3	보건 +3
7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후관리	4	행정 +4
8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2	세무 +2
9	강서구 S-Net(스마트서울네트워크) 사업	1	방송통신 +1
10	한국판 뉴딜사업(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1	토목 +1
11	한국판 뉴딜사업(스마트 통합 플랫폼 구축)	1	방송통신 +1
12	아동청소년업무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조정	-	5급+1, 6급이하-1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요인 : 세출예산 순증(인건비)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공무원 봉급 인상률 1.8%(최근 3년 평균)을 적용하여 비용 추계

나. 사회복지직·간호직 신규 공무원 인건비 : 시비 보조 포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세입	시비	202,500	412,290	419,712	427,267	434,958	1,896,727
	소계(a)	202,500	412,290	419,712	427,267	434,958	1,896,727
세출	시비	202,500	412,290	419,712	427,267	434,958	1,896,727
	구비	420,259	855,647	871,049	886,728	902,690	3,936,373
	소계(b)	622,759	1,267,937	1,290,761	1,313,995	1,337,648	5,833,100
총 비용(b-a)		420,259	855,647	871,049	886,728	902,690	3,936,373

※ 2021년 인건비 : 6개월분 산정 (2021. 7. 1. 이후 임용 예정)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분	비용	산출내역	비고
(합계)	1,245,517천원		
행정·세무직 등	660,000천원	30,000천원 × 22명	전액 구비
사회복지직	90,000천원	30,000천원 × 3명	시비 50% 보조
사회복지직	450,000천원	30,000천원 × 15명	시비 75% 보조
간호직	30,000천원	30,000천원 × 1명	시비 75% 보조
기타	15,517천원	15,517천원 × 1식	5,6급 조정/전액 구비

※ 행안부(서울시) 신규임용자 인건비 산정 기준 및 5,6급 평균 봉급액(연봉액) 참조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자체수입	420,259	855,647	871,049	886,728	902,690	3,936,373
의존재원 (시비보조)	202,500	412,290	419,712	427,267	434,958	1,896,727

6. 작성자 : 행정지원과 소윤희(☎ 2600-6032)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